

인천지방법원 2021. 5. 13 선고 2020가단220156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현암
담당변호사 박정혁, 양선화

피 고 1. A 주식회사
2. B
3. 주식회사 C
4. 주식회사 D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
담당변호사 임판, 이현민
변 론 종 결 2021. 4. 22.
판 결 선 고 2021. 5. 13.

주 문

1. 피고 A 주식회사,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128,402,114원과 그 중 128,075,185원에 대하여
피고 A 주식회사는 2020. 1. 20.부터 2020. 4. 7.까지는 연 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피고 B는 2020. 1. 20.부터 2020. 5. 11.까지는 연 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설기계에 관하여,

가. 피고 주식회사 C과 피고 A 주식회사 사이에 2019. 6. 20. 체결된 양도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주식회사 C은 피고 A 주식회사에게 2019. 6. 20. 접수 제3766호로 마친 소유권변경등록의 말소등록절차를 이행하라.

3.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설기계에 관하여,

가. 피고 주식회사 D과 피고 A 주식회사 사이에 2019. 7. 5. 체결된 양도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주식회사 D은 피고 A 주식회사에게 2019. 7. 5. 접수 제4081호로 마친 소유권변경등록의 말소등록절차를 이행하라.

4.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5.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피고 A 주식회사, B에 대한 구상금채권

(1) 원고는 2019. 3. 11. 피고 A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 명칭은 생략한다)와 사이에 보증금액 125,800,000원, 보증기한 2020. 3. 10.로 정하여 신용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A의 대표이사인 피고 B는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에 기한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피고 A은 위 신용보증서에 기하여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148,000,000원을 대출받았다.

(2) 피고 A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신용보증사고가 2019. 8. 30. 발생하였고, 중소기업은행은 2019. 9. 16. 원고에게 신용보증사고를 통지하고, 같은 해 11.경 원고에게 보증채무 이행을 청구하였다. 원고는 피고 A을 대위하여 2020. 1. 20. 중소기업은행에 128,075,185원을 변제하였고, 원고가 지출한 대지급금 잔액은 326,929원이며,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에서 정한 지연손해금율은 연 8%이다.

나. 별지 목록 기재 각 건설기계에 관한 각 처분행위

(1) 별지 목록 기재 각 건설기계(이하 순번에 따라 ‘이 사건 ①, ② 차량’이라 하고, 위 각 차량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차량’이라 한다)는 피고 A 앞으로 소유권이전등록이 마쳐져 있었다.

(2) 피고 A은 2019. 6. 20. 피고 C과 사이에 이 사건 ① 차량에 관하여 양도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① 처분행위’라 한다), 피고 C 앞으로 소유권변경등록을 마쳐주었다.

(3) 피고 A은 2019. 7. 5. 피고 D과 사이에 이 사건 ② 차량에 관하여 양도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② 처분행위’라 하고, 이 사건 ①, ② 처분행위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행위’라 한다), 피고 D 앞으로 소유권변경등록을 마쳐주었다.

다. 피고 A의 무자력

피고 A은 이 사건 각 처분행위 당시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대출금 및 신용카드대금 채무 226,000,000원 등이 있는 반면 적극재산으로는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각 차량을 보유하고 있어 이 사건 각 처분행위 당시 채무초과 상태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 1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인천 미추홀구청장, E기관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1.항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 A,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128,402,114원(= 대위변제금 128,075,185원 + 대지급금 잔액 326,929원)과 그 중 128,075,185원에 대하여 피고 A 주식회사는 대위변제일인 2020. 1. 20.부터 피고 A이 이 사건 소장 부분을 송달받은 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20. 4. 7.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피고 B는 2020. 1. 20.부터 피고 B가 이 사건 소장 부분을 송달받은 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20. 5. 11.까지는 연 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C,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구상금채권이 이 사건 각 처분행위 당시에는 아직 발생하지 아니하였지만 원고와 피고 A 사이에서는 이미 위 채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이 2019. 3. 11. 체결되어 있었고, 이 사건 각 처분행위일(2019. 6. 20. 및 2019. 7. 5.)로부터 약 2개월 만인 같은 해 8. 30.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으며, 중소기업은행이 같은 해 9. 16. 원고에게 신용보증사고를 통지하고, 같은 해 11.경 원고에게 보증채무 이행을 청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처분행위 당시 가까운 장래에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구상금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원고가 2020. 1. 20. 중소기업은행에 대위변제함으로써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구상금채권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였으므로,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등

피고 A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각 차량을 피고 C, D에게 양도한 이 사건 각 처분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를 포함한 일반채권자를 해하게 된다는 사정을 알면서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 C, D의 악의는 추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행위는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 C, D은 피고 A에 이 사건 각 차량에 관하여 마친 각

소유권변경등록의 말소등록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 C, D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각 차량은 F, G이 피고 A에 각 지입한 차량으로, F, G은 피고 A이 운영난으로 사업을 계속 영위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자 피고 A과의 차량 지입계약을 해지하고 피고 C, D과 새로 지입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 A이 피고 C, D 앞으로 차량등록명의를 이전한 것이므로, 이 사건 각 처분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 단

(가) 자동차 소유자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 사이에, 대외적으로는 자동차 소유자(이하 ‘지입차주’라 한다)가 그 소유의 차량 명의를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이하 ‘지입회사’라 한다)에게 신탁하여 그 소유권과 운행관리권을 지입회사에 귀속시키되, 대내적으로는 위 지입차량의 운행관리권을 위탁받아 자신의 독자적인 계산 아래 운행하면서 지입회사에 일정액의 관리비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른바 ‘지입계약’이 체결된 경우, 지입차주는 지입차량에 대한 배타적인 운행관리권을 지입회사에 대하여 주장할 수 있는 지입회사의 채권자 내지 지입차량의 점유자이므로, 지입회사가 지입차량의 소유명의를 지입차주나 제3자에게 이전해 주는 것은 지입회사의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가 된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지입회사에 일반채권자를 해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지입계약 해지에 따른 지입차량의 등록명의 이전행위 등은 수탁자인 지입회사에서 신탁자인 지입차주로 소유권이 복귀되는 기존채무의 이행행위에 불과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3. 4. 8. 선고 2002다71566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각 사정을 종합해보면, F, G이 피고 A과 이 사건 각 차량에 관하여 지입계약을 체결한 것이거나 이 사건 각 처분행위가 피고 A의 F, G에 대한 기존채무의 이행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 C, D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자동차관리법 제6조에 따라 자동차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기므로

자동차 소유권은 자동차등록원부의 기재에 따라 표상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등록원부상의 소유명의자가 자동차 소유자로 추정되며, 그 등록이 없는 한 대외적 관계에서는 물론 당사자 사이의 대내적 관계에 있어서도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이 사건 각 차량은 당초부터 피고 A 앞으로 소유권이전등록이 마쳐져 있었고, F, G 앞으로 그 소유권 등록이 된 적이 없다.

2) 피고 A은 2016. 11.경 H캐피탈로부터 피고 A 소유이던 (차량번호 1 생략) 차량 및 이 사건 ① 차량을 담보로 각 28,000,000원을 2016. 11. 23.부터 2019. 11. 25.까지 원리금을 분할 납부하는 내용으로 대출받았다.

3) F는 2016. 12. 10. 피고 A과 사이에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에 관하여 남아 있는 할부기간인 2016. 11. 25.부터 2019. 11. 25.까지 월 915,358원의 할부금을 F가 납부하는 조건으로 차량을 불하하고 할부가 끝나면 명의이전을 할 수 있다. 매달 매출에서 주유대, 수리비, 할부금 등 차량에 대한 지출금액을 제외하고 지급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을 운행하였다. 그 후 피고 A은 (차량번호 1 생략) 차량 등록을 말소하면서 2019. 5. 23. 위 차량의 영업용등록번호를 이 사건 ② 차량으로 교체 등록하였고, F는 같은 해 6. 1. 피고 A과 이 사건 ② 차량에 관하여 종전과 동일한 약정을 체결하였다. G은 2016. 12. 10. 피고 A과 이 사건 ① 차량에 관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고 위 차량을 운행하면서 피고 A으로부터 운반비에서 차량 할부금 등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받았다.

4) 위 각 약정은 피고 A이 그 소유인 위 각 차량을 담보로 받은 대출원리금 상당액을 F, G이 매월 부담하고 대출원리금을 전액 변제하면 위 각 차량 명의를 이전받기로 하는 내용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지입차주가 대외적으로 그 소유의 차량 명의를 지입회사에게 신탁하고 대내적으로 그 지입차량이 운행관리권을 위탁받아 운행하는 형태의 계약으로 보기 어렵고, 이 사건 각 차량은 피고 A의 책임재산에 해당한다. 5) 을 제3, 5, 6,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각 처분행위 당시 F, G이 피고 A에 위 각 차량에 관한 대출원리금 등을 전액 지급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피고 C은 피고 A과 법인 소재지가 ‘인천 서구 I건물, J호’로 동일하고, 피고 A의 사내이사인 K이 피고 D의 감사인 점 등에 비추어 위 각 회사는 서로 관계있는 회사로 보인다. 설령 F, G이 피고 A에 위 각 차량에 관한 대출원리금 중 일부를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 A은 F, G

앞으로 이 사건 각 차량에 관한 소유권등록을 마친 것이 아니라, 위 피고 회사들 앞으로 소유권 등록을 마쳐주었고, 을 제9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F, G이 피고 C, D과 지입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고(F, G이 피고 A과 체결한 각 약정을 지입계약으로 볼 수 없음은 앞서와 같다),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 A이 피고 C, D과 이 사건 각 처분행위를 한 것은 F, G에 대한 기존 채무를 이행한 것이 아니라, 피고 A의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에 해당하고, 피고 회사들은 피고 A이 운영난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되자 피고 A의 일반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이 사건 각 처분행위에 나아간 사정을 충분히 추단할 수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다선

목 록

1. 등 록 번 호 :
건 설 기 계 명 : 덤프트럭
형 식 : P114CB8X4NZ
규 격 : 24톤
차대 일련번호 :
제작국 / 연식 : 대한민국/2002
제 작 회 사 : (주)
수입또는제작일자 : 2002-10-09
형식승인번호 : 1-06-0040-02-00
용 도 : 영업용

2. 등 록 번 호 :
건 설 기 계 명 : 덤프트럭
형 식 : P124CB8X4NZ
규 격 : 24톤
차대 일련번호 :
제작국 / 연식 : 대한민국/2001
제 작 회 사 : (주)
수입또는제작일자 : 2001-04-17
형식승인번호 : 1-06-0040-01-00
용 도 : 영업용

- 이 상 -